

광주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533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5335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가단270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동재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욱

변론 종결 2020. 1. 15.

판결 선고 2020. 2. 5.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가단2706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망 C의 상속인 중 한 명인 당심 증인 E이 '원·피고를 비롯한 4남매가 모여서 이 사건 부동산을 누나인 피고에게 이전하여 관리하자고 협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돌려준다고 하거나 피고가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혜원

판사조현호

판사이양희

별지